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94

2019. 7. 15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조영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 배경 및 목적

-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의 정당성 확보 필요

■ 시사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등, 비상벨,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방범덮개 등 범죄예방시설의 유형별 설치 비용을 표준화하였으며,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관 사업의 비용 산출 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범죄(강간, 강도, 절도, 살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의무화 정책은 실익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약 1,073억 원)보다 범죄 감소에 따른 편익(약 3,559억 원)이 약 3.3 배 큰 것으로 도출됨

1 필요성 및 목적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¹⁾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다세대 · 다가구 주택 등 의무 대상 확대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으로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범죄예방 의무 대상으로 확대
 - 시행령에 의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개정 시행(2019.7.31.)으로 신규 의무 대상 용도인 다세대 ·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수립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 개정 내용

기준	현행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과 같음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 9. (생략)	2. ~ 9. (기준과 같음)

- 방범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범죄예방 기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기준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 등 경제적 분석이 필요
 -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출 필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비례성과 유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비용 산출

-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 방안의 비례성 확보
 -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의 비교를 통한 해당 정책의 비례성 확보
- 표준적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도출하여 향후 관련 사업 수행의 효율성 확보
 - 도시재생 뉴딜, 어촌뉴딜 300 등 지역 차원의 공간 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에서 CCTV 설치 등 CPTED를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음
 - 방범시설과 관련한 방범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불투명한 시장가격으로 인해 동일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이에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가격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CPTED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범죄예방 의무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의 사업 효율성을 확보

2 분석 대상 및 범죄예방시설

■ 경제성 분석 대상

-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유형별 단지, 동 및 세대수 산정
 - 개정된 고시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강화되는 건축물은 대다수가 주거용 건축물로 규모와 세부 용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①500세대 이상 아파트, ②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③100세대 미만 아파트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오피스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세 가지 유형 건축물의 단지, 동수와 세대수의 추출을 위하여 관련 통계 자료 활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유형별 건축물 동수와 세대수 추출을 위한 공공 통계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통계명	추출 통계
K-APT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 동 · 호수 및 주거전용면적 현황	연간 신축 150세대 이상 아파트 동수와 세대수
세움터	주택 유형별 연면적, 동수 현황, 다가구주택 가구수 현황	연간 신축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동수와 연면적
건축통계집	오피스텔 동 · 호수 · 연면적 현황	연간 신축 오피스텔 동수, 호수와 연면적
주거실태조사	건축 유형별 평균 면적	연간 주택 용도별 단위 전용면적

*주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유형별 건축물 연간 신축 세대수(2014~2017년 평균)

구분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연간 세대수	190,198	70,711	21,146	124,204	97,238	23,087	123,279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범죄 유형 및 건수 산정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중 범죄발생장소 통계를 바탕으로 5대 강력범죄 중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강간과 주거지 절도 등 부분적으로 예방 가능한 범죄 유형 선정²⁾

2) 폭력의 경우 우발적 발생 및 가정폭력의 빈도수가 높아 주거지 침입에 의한 범죄 목록에서 제외

대상 범죄의 전체 건수 및 주거지 발생 건수(2013~2017년 발생)

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전체	주거지	전체	주거지	전체	주거지	전체	주거지
연평균	932	176	1,452	107	6,774	1,193	237,979	18,434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2018)

■ 주택 유형별 의무 적용 범죄예방시설

- 의무 적용 대상 유형별 건축물에 의무 설치되는 범죄예방시설
 - 개별 주택 유형별로 설치되는 범죄예방시설의 종류는 개정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로 설치되는 시설의 위치 및 종류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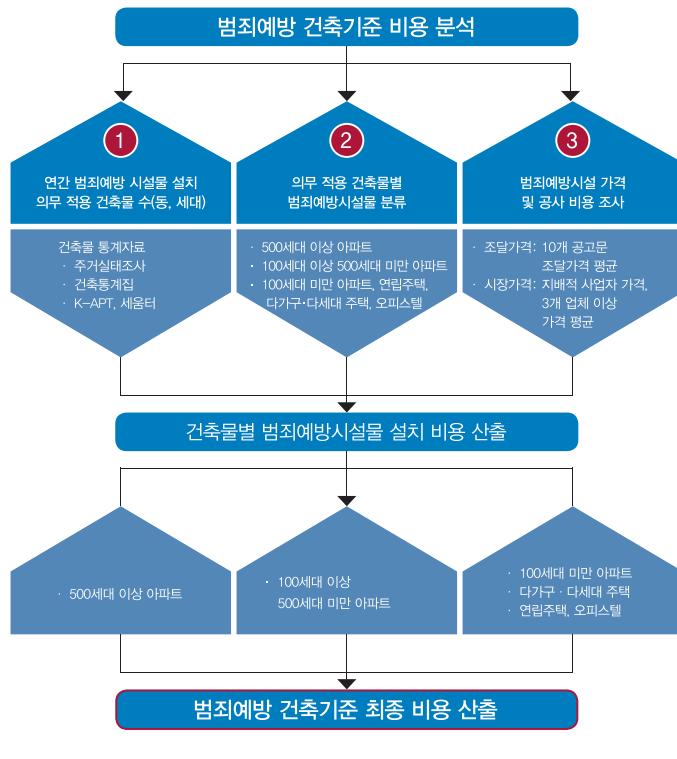
주택 유형별 의무 대상 범죄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

구분	고시 적용 조문	범죄예방시설 설치 위치	설치 시설 종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제10조 1항의 3, 제10조 11항	대지출입구, 주차장	전주형 보안등
	제10조 11항	건축물 출입구, 측면, 뒷면, 사각지대	벽부형 보안등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10조 1항의 3, 제10조 11항	대지출입구, 주차장	전주형 보안등
	제10조 11항	건축물 출입구, 측면, 뒷면, 사각지대	벽부형 보안등
	제10조 3항의 2	어린이 놀이터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0조 4항의 3	경비실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0조 9항의 1, 제10조 9항의 2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 계단실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10조 5항의 3	주차장	비상벨
	제10조 7항의 1	건축물 출입구	접근통제시설(키패드)
	제10조 8항의 1	세대 창호 방범성능 강화	크레센트
	제10조 10항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방범덮개
1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제11조의 5	주차장	전주형 보안등
	제11조의 5	건축물 출입구, 측면, 뒷면, 사각지대	벽부형 보안등
	제11조의 2	세대 창호 방범성능 강화	크레센트
	제11조의 4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방범덮개
다가구 · 다세대주택	제11조의 5	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측면, 뒷면, 사각지대	벽부형 보안등
	제11조의 2	세대 창호 방범성능 강화	크레센트
	제11조의 4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방범덮개

3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 분석

■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 산출 프로세스

-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은 범죄예방 기준 의무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구입 가격 및 시공 비용으로 산정하고, 유형별 건축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 산출



■ 범죄예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비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전주형, 기존의 기둥과 외벽 등을 활용한 부착형으로 구분
 -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용은 2018~2019년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을 조사하였으며,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를 분석한 결과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성 요소는 CCTV, 기둥설치 및 지반공사, 네트워크 장비, 연결공사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설치 총 공사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관급자재 비용+한전불입금’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산출한 후, 이를 설치 대수로 나누어 개별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단가 도출

영상정보처리기기 1식당 평균 가격

구분	전주형	부착형*
1식당 평균 가격	13,956,717원	243,158원

*주 :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국내 방범업계 1위 업체의 판매가격 정보 활용

• 보안등

- 보안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을 조사하여 관련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마찬가지로 2018~2019년 공고문을 조사 분석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관급자재+한전불입금을 설치 대수로 나눈 값을 통해 1식당 설치 비용 산출

보안등 1식당 평균 가격(전주형 및 벽부형)

구분	전주형	벽부형*
1식당 평균 가격	940,904원	162,724원

*주 : 벽부형 보안등은 관련 업체 3개의 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평균 단가 산출

• 비상벨

- 비상벨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 및 지자체 비상벨 설치 문서를 조사하여 관련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2017~2019년 공고문 및 공개된 공문서를 조사 분석

비상벨 1식당 평균 가격

구분	비상벨
1식당 평균 가격	1,326,837원

•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크레센트, 방범덮개

- 시장가격은 개별 구입 비용이 아닌 설치비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조사
- 대표 사업자가 없는 경우 최소 3개 업체 이상의 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평균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대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가격 정보를 단가 산출 가격으로 산정

출입문 접근통제시설·크레센트·방범덮개 1식당 평균 가격

구분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크레센트	방범덮개
1식당 평균 가격	318,150원	92,718원	132,714원

■ 주택 유형별 범죄예방시설 설치 물량 및 비용

• 500세대 이상 아파트

-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강화된 내용은 대지출입구, 건축물 측면·뒷면·주차장·사각지대의 적절한 조명 설치
- 1개 동당 보안등 2개, 벽부형 보안등 4개가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산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시설 추가설치 비용*

시설	단위	대상 수	1식당 평균 공사비(원)	단위당 공사비(원)	총 공사비(천원)
전주형 보안등	동, 1동당 2식	2,792동	940,904	1,881,808	5,254,008
벽부형 보안등	동, 1동당 4식	2,792동	162,724	650,896	1,817,302
합 계					7,071,310

*주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의무 대상 시설이었으므로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고시로 인한 범죄예방시설 추가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계상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의무 대상 범죄예방시설은 보안등(대지출입구, 건축물 측면·뒷면, 주차장, 사각지대), 영상정보처리기기(어린이 놀이터 및 경비실, 지하층, 옥상출입구, 계단실), 비상벨(주차장), 접근통제시설(건축물의 출입구), 세대 창호 방범성능 강화,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침입방어시설임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

시설	단위	대상 수	1식당 평균 공사비(원)	단위당 공사비(원)	총 공사비(천원)
보안등	1동당 2식	1,038동	940,904	1,881,808	1,953,717
벽부형 보안등	1동당 4식	1,038동	162,724	650,896	675,630
어린이 놀이터 및 경비실 CCTV 설치	1단지당 2기	251단지	13,956,717	27,913,434	7,006,272
주차장 비상벨	1동당 2식	1,038동	1,326,837	2,653,673	2,754,513
키패드	1동당 1식	1,038동	318,150	318,150	330,240
크레센트	1세대당 1식	70,711세대	92,718	92,718	6,556,182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및 계단실 CCTV	1동당 5기	1,038동	243,158	1,215,790	1,261,990
침입방어시설	1동당 1식	1,038동	132,714	132,714	137,757
합 계					20,675,901

-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보안등(대지출입구, 건축물 측면 · 뒷면, 주차장, 사각지대), 세대 창호 방범성능 강화,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침입방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

시설	단위	대상 수	1식당 평균 공사비(원)	단위당 공사비(원)	총 공사비(천원)
보안등 (1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1동당 2식	4,460동	940,904	1,881,809	8,392,868
벽부형 보안등 (1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1동당 4식	4,460동	162,724	650,896	2,902,996
벽부형 보안등 (다가구 · 다세대주택)	1동당 5식	33,410동	162,724	813,620	27,183,044
크레센트	1세대당 1식	388,954세대	92,718	92,718	36,063,037
침입방어시설	1동당 1식	37,870동	132,714	132,714	5,025,879
합 계					79,567,825

- 주택유형별 범죄예방시설 설치 총 비용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설치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동당 253만 원,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동당 1,992만 원, 그 외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동당 210만 원 소요
- 이에, 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로 인한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총 비용은 연간 약 1,073억 1,300만 원으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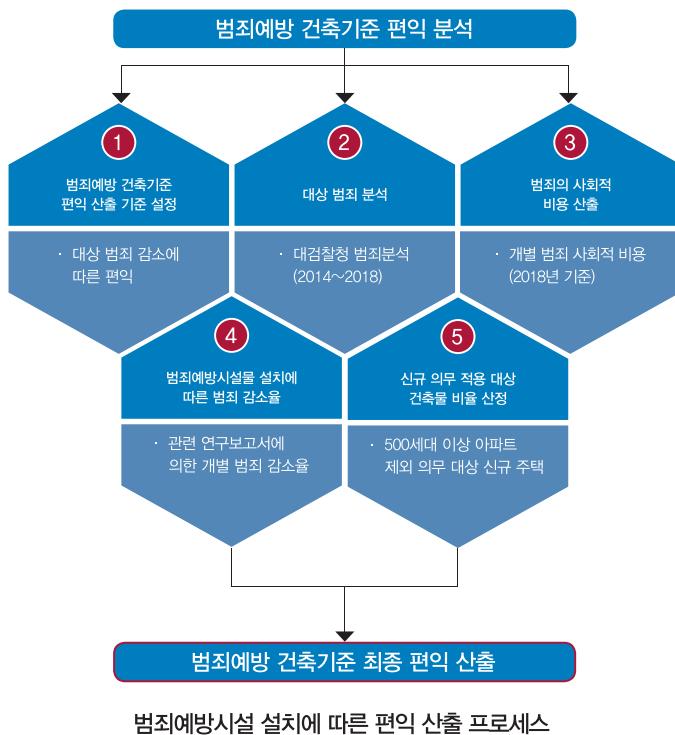
의무대상 적용 주택 유형별 시설 설치 총 비용

구분	항목별 비용			
	계(천원)	대상시설(동)	공사 비용(천원/동)	
건축물의 범죄 예방 의무대상 확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7,071,313	2,792	2,533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	20,675,901	1,038	19,919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79,567,825	37,870	2,101
	합 계	107,313,039	41,700	2,573

4 범죄예방시설 확대 적용에 따른 편의 분석

■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 산출 프로세스

- 의무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범죄유형 및 범죄별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범죄 감소율 및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비율을 곱하여 최종 범죄예방 건축기준 편의 산출



■ 범죄 유형별 사회적 비용 및 범죄 감소율

- 주거지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 범죄 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발행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
 - 범죄발생 사회적 비용은 예방비용(보호조치, 예방행위), 결과비용(재산손실, 정신적 육체적 충격, 생산성 손실, 피해자 지원 비용, 의료비용), 대응비용으로 구성³⁾
 - 범죄 발생의 사회적 비용 중 결과비용만을 편익을 위한 비용으로 추정하여 편익을 산출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8년 통화가치로 재산정하여 추정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예방비용에 해당하고, 대응비용은 공공기관의 운영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 개정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대상에서 제외

주거지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 천원)

범죄 분류	개별 범죄 1건당 결과비용(2008)	개별 범죄 1건당 결과비용(2018)	연평균 발생 건수(주거지)	총 사회적 비용 (2018)
살인	17,057,795	20,698,270	176	3,642,895,520
강도	42,889	52,042	107	5,568,494
강간	204,890	248,618	1,193	296,601,274
절도	595	722	18,434	13,309,348

※ 출처 : 박경래 외(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p.398 재구성

•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범죄감소율 산정⁴⁾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15년 수행한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 사업 수행 시의 범죄 감소율을 적용
- 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하여 절도는 평균 13.01% 감소하였으며, 강간은 평균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침입에 의한 살인 및 강도 범죄의 감소율을 절도 범죄의 13.01%를 준용하고, 강간은 보고서에 의한 9.1%를 범죄 감소율로 적용

■ 고시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시설 설치의 경제적 편익

• 고시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 비율 산정

- 주거지 발생 범죄 건수, 단위 범죄의 사회적 비용, 범죄예방시설 설치로 인한 범죄 감소율을 적용하여 범죄예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 산출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편익만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체 의무 대상 신규 주택 물량 중 기존에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비율 도출

전체 세대수 대비 신규 의무 적용 건축물 세대수 비율

평균 연간 신축 세대수			합 계	
아파트	500세대 이상	190,198	의무 대상(A)	전체(B)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70,711	459,665	649,863
	100세대 미만	21,146		
	다가구 주택	124,204		
	다세대 주택	97,238		
	연립주택	23,087		
	오피스텔	123,279		
의무 대상 비율(A/B)			0.707	

4) 개별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통한 범죄 감소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관련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범죄 감소율 추정

-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범죄유형별 편익
 - 범죄유형별 편익 산출식⁵⁾ : 개별 범죄 5년간 평균(주거지)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의무 대상 비율 × 2018년 기준 범죄 1건당 사회적 비용 × 범죄 감소율로 산정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범죄 유형별 범죄 감소에 따른 총 편익 (단위 : 천원)

범죄 유형	평균 범죄 발생 건수	1건당 사회적 비용	의무 대상 비율	총 사회적 비용	범죄 감소율	절감 예상액(편익)
살인	176	20,698,270	0.707	2,575,527,133	13.01%	335,076,080
강도	107	52,042		3,936,925	13.01%	512,194
강간	1,193	248,618		209,697,101	9.10%	19,082,436
절도	18,434	722		9,409,709	13.01%	1,224,203
총 편익						355,894,913

- 위 산정 방식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총 편익은 약 3,558억 9,400만 원으로 도출

4 결론

- 범죄예방시설의 표준적 설치 비용은 종류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약 1,400만 원, 보안등 약 95만 원, 비상벨 약 130만 원으로 도출
 - 영상정보처리기 1식당 설치 평균 가격은 전주형의 경우 1,395만 6,717원이며, 부착형의 경우 24만 3,158원
 - 보안등의 1식당 설치 평균 가격은 전주형의 경우 94만 904원이며, 벽부형의 경우 16만 2,724원
 - 비상벨의 1식당 설치 평균 가격은 132만 6,837원
 - 1식당 출입문 접근통제시설의 평균 설치 가격은 31만 8,150원, 크레센트의 평균 설치 가격은 9만 2,718원이며, 방범덮개의 평균 설치 가격은 13만 2,714원

5) 신규 의무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 건축물(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독주택의 단독용도 제외)이 전량 신축되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성능이 확보된 것을 가정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대상 확대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1동당 약 210만 원 등 연간 약 1,07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존 의무 대상 범죄예방시설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은 약 71억 원으로 1개 동당 약 253만 원의 비용 소요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의무 적용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은 약 206 억 원으로 1개 동당 약 1,992만 원의 비용 소요
- 100세대 미만 아파트·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의 의무 적용 범죄 예방시설 설치 비용은 약 796억 원으로 1개 동당 약 210만 원 소요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총 비용은 연간 약 1,073억 원으로 추산 되며, 의무 대상 건축물 1개 동당 약 257만 원의 비용 소요 추정

■ 범죄예방시설의 확대 설치에 따른 범죄 감소로 약 3,559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비용 대비 3.3배 높은 것으로 추산됨

-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은 주거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침입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살인·강도·강간·절도 범죄임
- 주거지역 내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 9,000 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이번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범죄 감소로 인해 약 3,559억 원의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비용 대비 3.3배 높은 것으로 추산됨

조영진 연구위원 (044-417-9692, yjcho@auri.re.kr)
현태환 연구원 (044-417-9673, thhyeon@auri.re.kr)